

홍보 사항을 통한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바랍.

8. 기타필요한 사항

없 음

9. 체계지구심사내용

없 음

호적과태료원법건수 및 과태료징수현황

건수/천원

원법	1990년		1991년		비고
	건 수	과태료세액	건 수	과태료세액	
계	16,109	2,455/30,998	5,684	698/15,484	
1월	1,174	161/2,185	1,275	117/2,595	
2월	1,431	180/2,371	1,840	187/4,300	
3월	1,707	242/3,089	1,706	214/4,757	
4월	1,245	266/3,285	863	180/3,832	
5월	1,461	237/2,913			
6월	1,189	169/2,244			
7월	1,255	168/2,322			
8월	1,509	207/2,848			
9월	1,151	242/2,245			
10월	1,480	198/2,397			
11월	1,199	203/2,726			
12월	1,308	182/2,373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조례(안)

제4조(부과기준 및 면제) 2항 3 기타 구청장은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

1) 구청장이 서류 검토 후 민원인으로서 성실 의무를 행하였으나, 행정착오등으로 인하여 해태되었을 때

예) 출생신고를 30일 이전에 동에 신고를 하였을 경우 동에서 본적지에 통보하였을 때 본적지에서 본판이나 글자 한 획이 틀렸을 때는 주소지로 반송하며 주소지(동사무소)에서 민원인에게 연락을 하였을 때 장기 출타나 연락의 지연등으로 1개월이 경과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1. 5. 3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91. 5. 28.

나. 제안자: 부천시청

다. 회부일자: 1991년 5월 28일 회부

라. 상정일자: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1.5.29)상정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1.5.30)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공업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

가. 제안이유

(환경보호과 소관)

- 날로 급증하고 있는 일반폐기물(쓰레기,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 청소업무 위임으로 청소행정의 능률 증진을 위함.

(공업과 소관)

- 공장설립(허가 및 등록)에 관한 공업배치법(구법)이 '91.1.13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신법)로 개정되었으며
- 구법에 의하여 공장설립 완료보고는 시장이, 공장등록업무는 구청장(위임업무)이 처리하므로써 행정처리가 이원화 되어있었으나 신법에서는 위의 2가지 민원 처리를 동일 기관장이 처리하도록 규정(신법 제16조)하고 있음에 따라
- 공장의 등록권한은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공장의 등록 취소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지않아, 공장의 등록(신법 제16조)과 공장의 등록취소권한(신법 제17조)을 일치시켜 행정처리의 합리성과 합법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환경보호과 소관)

- 청소업무중 다음사항을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 일반폐기물 처리 방법의 개선 및 주민지도
 - 공중변소 및 공중용 쓰레기용기 설치관리
 - 쓰레기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 지정
 -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신고 수리 및 준공검사
 - 분뇨 정화조, 오수 정화시설 또는 축산

폐수정화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조치 명령

-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지도감독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지도감독
- 가축 사육의 제한에 관한 사항
-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단,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한함)

(공업과 소관)

- 공장의 설립 완료보고, 공장의 등록, 공장의 등록취소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

(도시과 소관)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공익, 공공사업 및 승인사항 제외) 및 신고업무 구에 위임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공업과 소관) ○ 시청에는 파장을 비롯한 전문직이 있는데 구청에도 전문직과 수입능력은 있는지요?	○ 구청에서는 사회산업과 상공계에서 공장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전문직요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장등록업무를 지금까지 구청에서 처리하여 주었으므로 수입능력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공장설립허가부터 공장등록증 교부까지 전문직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어느 부분입니까?	○ 공장설립허가서가 접수되면 전문직, 기술직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공실·과인 환경보호과, 주택과등에서 검토, 확인되며 공장등록시에는 특별히 전문직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공장설립허가부터 공장등록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 공장설립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시청 공업과에서는 관련 부서인 주택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등에 협조전으로 의견을 물은 뒤 부천시 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금까지 시청에서 처리하던 공장설립 완료 보고를 왜 구청장에게 위임시켜 주려하는가?	○ 공장설립허가를 득한 민원인은 기계, 장치등 제반시설을 완비한후 공장설립 완료보고서를 시에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후 완료보고 처리를 하여줍니다. ○ 공장설립완료보고를 끝낸 민원인을 해당구청에 공장등록 신청을 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공장등록증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 공업매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설립완료보고서를 접수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개월이내 공장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공장설립완료보고와 공장등록은 동일업무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공장등록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에게 위임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 시청에 있어 매우 중요한 환경업무를 구로 위임하는 것의 타당성을 고려하였는지?

○ 중요한 환경업무를 구에 위임하려는 것이 아니며 청소업무중 일부를 구에 위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코자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시민이 직접 민감하게 느끼는 것으로서 항상 깨끗이 처리되어야하나 현재 청소업체 허가 및 지도감독권한이 시에 있어 지도감독권한을 구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코자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분리포장보관 수거 깨끗한처리등 당면문제는 시민에 대한 부단한 홍보화하여 긴급출동하는 등 폭주하는 업무에 따른 비효율적인 체제에서 벗어나 보다 더 발전적 시책 개발업무에 전념할 수 있으며 구의 입장에서 쓰레기 수거에 따른 주민 지도와 청소업체지도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능률적인 청소업무 추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위임조례중 기 내부위임규정으로 위임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일반폐기물 재생이용신고수리, 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신고수거 및 준공검사, 분뇨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조치명령, 가축사육 제한에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실제 새로 위임되는 주요 골자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지도감독 및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입니다. 여기에 정화조 설계시공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인에 소형주택의 건축허가 건수가 많아 설계시공업자가 약 90% 이상인 구청의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어 이를 위임코자하는 것입니다.

- 쓰레기 자체 수집운반처리 자정정으로 입체의 구역지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 위생공사에서 차량운행시 상차하지 못하는 폐기물 관리법에 1일 300일 이상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은 자체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전국적인 실태로 볼때 쓰레기 배립장에서는 개인이 가져오는 쓰레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등 주택과 공장대형상가 등 쓰레기 다량배출처가 계약에 의해 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현재 5

개업체에서 계약한 주택에 자체수집 운반처리자 지정신청을 하여 지정해주는 것이며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 5개업체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주택 등은 모두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로서 앞으로 신축공동주택 등에 대한 지정만하면 되는것으로 이에 따른 절차일 뿐인 것으로 어느 업체를 지정하여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설"이라함은 구위임조례에 새로이 추가되는것은 아닙니다.

(도시과 소관)

○ 개발제한 구역의 허가행위를 구로 위임할 경우 훼손이 너무 방임되는 것은 아닌지?

○ 시에서는 계장의 직원 1명이 처리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각 구청별 계장의 2명이 처리하고 업무가 분담되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며, 위임되는 업무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경유절차의 간소화로 구에서 자체처리가 처리가 가능함으로써 민원인이 이중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가 없으며, 전혀 구로 위임하여도 방임되는것은 아님.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의원명	주요요지
임근규	본위임조례안은 지방화 시대에 따라 주민 편의 차원에서 구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정월남	주민편의 차원에서 시에서 처리하는 민원보다 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김옥현	주민편의 차원에서 이관하는 것이므로 타당성이 있음.

나. 반대토론

의원명	주요요지
	없음

5.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없음

나. 수정이유

없음

다. 수정주요골자

없음

6.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가능한 시행령의 업무를 구로 이관 시킴으로서

민원에 대한 편익위주로 개선 바람.

8. 기타필요한 사항

○ 행정편의상구로 업무이관한 것에 대한 타당성은 이해가 가나 구로 이관 함으로서 인한 시에서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음.

9. 체제자구심사내용

없음.

부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1. 5. 3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91. 5. 28.

나. 제안자: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1991년 5월 28일 회부

라. 상정일자: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1.5.

29)상정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1.5.

30)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문화공보담당관)

제안사유 1. 시민에 대한 음악서비스의 증진

2. 일류 연주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조직체계 보장

주요골자 1.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 증원

(조례 제3조)

2. 단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단원제 신설(조례 제3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문) 본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 및 부천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부천시민이 살아가는데 무슨 지장이 있는가?

답) 부천필은 현재 70명 단원으로 2관편성되어 있어 연주의 폭이 좁다. 조례개정안이 부결되어 단원증원을 하지 못할 경우 양질의 음악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없게되고, 단원들의 사기양양이나 수준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문) 부천필의 단원을 지금 증원하지 않고, 시민회관이 관객 이차고 넘치면 그때에 가서 증원하는 것은 어떠한가?

답) 시민회관 관객이 차고 넘칠 때 그때에 증원한다는 것은 찾는 손님이 많으면 그때에 좋은 작품을 제공할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다.